

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6. 12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제안이유

이천시시립도서관이 '96.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가. 도서관은 이천시 창전동 산10-10번지로 둠(안 제2조).

나.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토록 함(안 제3조).

-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운영
-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
- 자료실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
-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함(안 제 4조).

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(안)

제1조(설치)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쁨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을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이천시시립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2조(위치) 도서관은 이천시 창전동 산10-10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운영
2.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
3. 자료실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
4.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관장)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도서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